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2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소병훈의원안, 김예지의원안)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8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23.
- (3) 회 부 일 : 2024. 12.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소병훈의원안, 김예지의원안)

현 행	소병훈의원안	김예지의원안
☐ <신 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의2 신설) ○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u> 설치금액 ○ 세액공제율: 대 5%, 중견 10%, 중소 15% ○ 중복적용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의2 신설) ○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u>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편의시설</u> 설치금액 ○ 세액공제율: 대 10%, 중견 15%, 중소 20%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소병훈의원안 2024. 11. 12. 발의(의안번호 5489), 김예지의원안 2024. 12. 23. 발의(의안번호 6823)

☐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이고, 세액공제율은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임.

김예지의원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¹⁾을 받은 편의시설 설치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이고, 세액공제율은 10%(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²⁾,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 포함됨.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운영 중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일부 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반면, 민간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및 시설 이용의 편리성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장애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인 편의시설의 설치율³⁾은 89.2%이고 적정설치율⁴⁾은 79.2%로 나타나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법적 기준에 적합한 설치를 확인하는 적정 설치율이 여전히 80% 미만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2018년 및 2023년 편의시설 설치율 비교]

(단위: 개)

구분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018년도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2023년도	6,440,413	5,743,896	89.2%	5,099,250	79.2%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2023. 11.

주: 2018년 대비 설치기준 항목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조사방식 변경에 기인함

개정안과 같이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편의시설의 설치가 확대될 수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김예지의원안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자발적 인증 신청을 유도하는 효과가

3) 설치율은 기준에 정확히 부합되지는 않지만 항목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정도를 나타냄.

설치율(%): (적정설치수+미흡설치수) * 100 / 시설별 편의시설 의무설치 항목 수

4) 적정설치율은 항목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법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정도를 나타냄.

적정설치율(%): 적정설치수 * 100 / 시설별 편의시설 의무설치 항목 수

기대됨.

둘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⁵⁾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음료대 등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제도의 일관성 제고 및 편의시설 설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

구분	적용범위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작업대 및 장애인 등이 출입가능한 자동문 나.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경사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침실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열람석
2.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자동안내방송장치, 전자문자안내판, 휠체어승강설비
3. 통신시설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호환성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해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
4.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가.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및 작업장비(작업물 운송 및 운반장치,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경사각작업테이블,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나.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보조공학기기(청각장애인용 신호장치, 소리증폭장치, 화상전화기, 문자전화기,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트, 음성지원카드, 컴퓨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확대독서기,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음성메모기, 대형모니터) 다.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라.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제지원은 실질적 유인효과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의 효용성이 저하되

는 측면이 있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령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편의시설의 경우 이미 설치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의 처
02)6788-5154